

Ⓢ140-721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-75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****/전송(02)790-8911
보험국장 김기성(6574)/ 보험급여팀장 김선우(6576)/ 대리 고영옥(6573)/ E-mail: kma2010@daum.net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2045호

시행일자 2017. 3. 30.

수 신 각 시·도의사회장, 각 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과 개원의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고시 일부개정 안내

1. 관련근거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- 58호(2017. 3. 29)

2.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2항 및 제3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, 제3호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35호, 2017.2.28.)」 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께 안내 바랍니다.

[주요내용]

-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신설
-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 개선

[시행일] : 2017. 4. 1. 부터

[문의처] :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☎ 044-202-2743

붙임: 고시개정문 및 Q&A 각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